

## 인천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공고

2021년 인천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인천교통공사인사위원회 위원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단위 : 명)

채용 직급	채용분야	계	일반전형		보훈전형	직무 기술서
			공개경쟁	제한경쟁		
9급	계	229	136	73	20	
	사무	사무 1	44	32	2	10
		사무 2	34		34	직무기술서
	전기 전자	전 기	20	18		직무기술서
		신 호	22	20		직무기술서
		통 신	18	16		직무기술서
		전 자	11	11		직무기술서
	시설 환경	토 목	10	10		직무기술서
		건 축	3	3		직무기술서
	기계 설비	기계설비(기계)	5	4	1	직무기술서
		기계설비(전기)	10	9	1	
차량	차량(기계)	7	6		1	직무기술서
	차량(전기)	8	7		1	
	승 무	37		37		직무기술서

- ※ 일반전형(제한경쟁\_사무1)은 2. 응시자격요건 라. 자격 참조
- ※ 일반전형(제한경쟁\_사무2, 승무)는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소지자 모집
- ※ 보훈전형 합격인원 미달 시 동일 채용분야 일반전형에서 추가 채용. 단, 보훈전형 (사무)는 일반전형(공개경쟁\_사무1)에서 추가 채용.
- ※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 ※ 취업지원 대상자는 일반전형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중복지원 불가
- ※ 채용분야 및 인원 변경사유 발생시 필기시험일 7일전까지 수정공고 예정

## 2. 응시 자격요건

- 가. 연령 : 18세 이상자(2003.12.31. 이전 출생자), 공사 정년 범위 내
- 나. 학력 : 제한 없음
- 다. 거주지 제한
- **일반전형(공개경쟁) 채용분야(사무1, 전기, 신호, 통신, 전자, 토목, 건축, 기계설비(기계), 기계설비(전기), 차량(기계), 차량(전기)), 보훈전형 채용분야**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21. 1. 1.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2. 2021. 1. 1.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 유의사항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월(月) 단위 계산방법 : 1월을 모두 거주한 경우 해당월의 일수에 관계없이 1개월 인정, 1월 미만의 일수는 따로 합산하여 30일을 1개월로 환산하며 잔여 일수는 불인정]

- **일반전형(제한경쟁) 채용분야(사무1, 사무2, 승무)** : 제한없음

### 라. 자격

- **공통사항** : 자격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 **일반전형(공개경쟁) 채용분야(사무1, 전기, 신호, 통신, 전자, 토목, 건축, 기계설비(기계), 기계설비(전기), 차량(기계), 차량(전기))** : 제한없음
- **일반전형(제한경쟁) 채용분야(사무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일반전형(제한경쟁) 채용분야(사무2, 승무)**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임용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보훈전형 채용분야**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 보훈전형 응시자는 교대근무 및 현장근무 수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재, 복무 중인 자도 단계별 전형일정에 응시가 가능하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1. 9. 8 예정)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자

**바. 주·야간 교대(교번) 근무 가능자**

-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야간(22:00~익일06:00) 및 휴일 근로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임용 가능

**사.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br>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6.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br>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10. 채용비위가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br>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   |
|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br>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br>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br>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br>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br>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 철도안전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일반전형(제한경쟁\_사무2, 승무) 응시자에 한함,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 또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인 사람

자.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붙임 1)

- 일반전형[공개경쟁(사무1, 전기, 통신, 전자, 토목, 건축, 기계설비(기계), 기계설비(전기), 차량(기계), 차량(전기))], 보훈전형 채용 응시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합격판정을 받은 자
- 일반전형[공개경쟁(신호)] 및 일반전형[제한경쟁(사무2, 승무)] 채용 응시자 :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관련 규정에 합격판정을 받은 자

###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7. 9.(금) 09:00 ~ 7. 15.(목) 18:00

나. 접수처 :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ictr.scout.co.kr>)

다. 접수방법 :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 4. 시험방법 및 전형일정

시험방법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차 : 필기시험	2021. 7. 26.	2021. 8. 1.(예정)	2021. 8. 10.
2차 : 인성검사	2021. 8. 10.	2021. 8. 14.(예정)	
3차 : 면접시험	2021. 8. 18.	2021. 8. 23~8. 27.(예정)	2021. 9. 8. (최종합격자 발표)

- ※ 매 시험장소 공고시 시험일정을 확정·게시합니다.
- ※ 상기일정은 우리공사 여건 및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면접시험 합격자라도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용이 불가합니다.

## 5.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배점) : 2과목(과목별 100점 총 200점, 80문항)

채용분야		시험과목 및 배점 (2과목 200점, 80문항)	
		선택 1과목 (100점, 40문항)	공통 1과목 (100점, 40문항)
사무(사무1, 사무2)		행정학원론,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법학개론, 통계학개론, 전산학개론, 전자일반 중 택 1	
전기전자	전기	전기이론	직업기초 능력평가
	신호	전기이론, 전자일반, 통신일반 중 택 1	
	통신	통신일반	
	전자	전자일반	
시설환경	토목	토목일반(궤도일반 포함)	
	건축	건축일반	
기계설비	기계	기계일반	
	설비	기계설비(전기)	
차량	차량(기계)	기계일반	
	차량(전기)	전기이론	
승 무		기계일반, 전기이론, 전자일반 중 택 1	

※ 직업기초능력평가 채용분야별 영역

- 사무(사무1, 사무2)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 전기전자(전기, 신호, 통신, 전자), 시설환경(토목, 건축, 기계설비(기계), 기계설비(전기)), 차량(기계), 차량(전기)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기술능력
- 승무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나. 필기시험 합격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1.5배수(소수점 미만 자리는 버림)

단, 채용 예정인원이 10명 미만 경우 2배수

다. 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미응시자 등으로 인해 적격자가 1.5~2배수 미만인 경우에도 합격자로만 다음 전형 진행

## 6. 인성검사,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가.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측정내용

- 인성검사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인성 측정 (면접시험 참고자료로만 활용)

※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온라인 인성검사로 진행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 공고 예정

- 면접시험

- 1차면접(집단 대면면접) : 품행, 예의, 전문지식, 발표력 등 평가 (40점 만점)

→ 공기업 직원으로서 갖추어야할 덕목(10점), 일반·전문지식·응용능력(10점), 창의성, 논리성, 발표력(10점), 사회성, 발전가능성, 리더십(10점)

- 2차면접(PT면접) : 지원분야 직무능력과 관련된 지식 등 평가 (40점 만점)

→ 분석적 사고(10점), 문제해결 능력(10점), 기획능력(10점), 실무지식(10점)

※ PT면접은 면접시험 당일 부여되는 지원분야별 주제에 따라 개인별 작성 및 발표  
→ 개인별 작성방법 및 시간, 발표방법 및 시간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 안내

- **인성시험 미응시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화상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 공고 예정

다.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면접 결과, 면접위원이 평가한 집단 대면면접 평균점수, PT면접 평균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만점(80점)의 50% 이상인 사람 선발

-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만점의 20% 이하로 평가한 경우 탈락 처리

라.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50:50의 비율로 환산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내에서 선발

마. 예비합격자 선발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인원 초과자 중 최종 성적이 높은 순으로 아래와 같이 선발하며, 선발된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순위에 따라 임용 예정

구분	계	사무		전기	신호	통신	전자	토목	건축	기계설비		차량		승무	
		공개 경쟁	제한경쟁							기계 설비 (기계)	기계 설비 (전기)	차량 (기계)	차량 (전기)		
			사무1												
일반 전형	69	10	1	10	5	5	4	3	3	2	2	4	3	3	14

- ※ 보훈전형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동일분야 일반전형 예비합격자 중에서 상기의 기준으로 임용 예정. 단, 보훈전형(사무)의 경우에는 일반전형[공개경쟁(사무1)] 예비합격자 중에서 임용.
- ※ 동점자 순위결정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합산점수 고득점자, 필기시험 중 전공과목 점수 고득점자, 필기시험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고득점자, 면접 시험 합산점수 고득점자, PT면접 점수 고득점자, 집단대면면접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 7. 서류제출

가.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시기 : 2021. 8. 14. 예정(인성검사 당일)

※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온라인 접수로 대체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 공고 예정

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병역사항 기재 필)
- 일반전형(공개경쟁), 보훈전형 응시자의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소속부대장 발행)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원본 지참)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해당자, 원본 지참)
- 기록물관리 자격요건 증빙서류 사본(해당자, 원본 지참)
- 가산점 적용 대상 자격증 사본(해당자, 원본 지참)
- 청렴이행서약서

※ 사본 제출을 제외한 각종 증명서는 유효기간내의 원본제출만 인정

## 8. 가산점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대상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 가산방법

- 1차 필기시험 및 3차 면접시험에 적용

-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 이내 제한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나.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가산비율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선택과목 만점의 5%
산업기사 이상	선택과목 만점의 5%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철도교통관제사,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선택과목 만점의 3%

- 가산대상 : 채용분야 가산대상 자격증(붙임 2) 소지자로서 해당하는 채용분야에 응시하는 자
- 가산방법
  - 1차 필기시험(선택과목)만 가산을 적용하되 선택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일정비율(위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자격증 중복시 상위등급 1개만 적용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은 사무분야에 한하여 가산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는 전기, 신호, 토목, 차량분야에 한하여 가산

#### 다.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은 중복 적용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관제사 소지자 가산은 타 자격증 소지자 가산과 중복 적용하되,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와 철도교통관제사 소지자 간의 가산은 중복 적용 제외
-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 9. 유의사항

- 가. 채용 분야(사무1, 사무2, 전기, 신호, 통신, 전자, 토목, 건축, 기계설비(기계), 기계설비(전기), 차량(기계), 차량(전기), 승무)별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합니다.(중복 지원 불가)
- 나.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자격·면허증,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오입력, 착오입력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니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다. 지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라.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하여 신규임용자 양성교육을 거쳐 우리공사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며, 채용분야별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우선 임용합니다.
  - ※ 승무분야의 경우 실승훈련(구간인증) 완료 후 임용될 예정입니다.
  - ※ 일반전형(제한경쟁\_사무2)분야의 경우 임용 후 실승훈련(구간인증) 및 승무 업무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임용후보자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임용순위는 채용시험 성적순으로 하되 임용후보자 양성교육을 시행할 경우에는 교육수료성적순으로 합니다.

- 채용시험 성적 동점자의 순위 결정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합산점수, 필기시험 중 전공과목 점수, 필기시험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면접시험 합산점수, PT면접 점수, 집단대면면접 점수 순으로 한다.

- 마. 임용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이 불가하며,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바. 일반전형(제한경쟁\_사무2, 승무) 분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까지 유효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임용이 불가합니다.
- 사. 임용 후 공사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지원자 본인이 지원한 분야와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아.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 자. 채용시험 단계별 예비 순번을 부여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ictr.scout.co.kr>) 내 “이의제기”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장애인 등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붙임 3)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 지원요건,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한 후 응시원서 접수 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카.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됩니다.(붙임 4)
- 타. 채용과정 중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확진자는 모든 시험 응시가 제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붙임 5)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하. 최종 신규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팀(032-451-2073, 2075)으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 1)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 1. 일반결함

-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 나. 고혈압성 응급증

#### 2. 비강(鼻腔) · 구강 · 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 · 구강 · 인후 ·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 4. 심장 · 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

####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 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 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 9. 신경 계통

-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 2) 외상성 신경질환
  - 3) 말초신경질환
  -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6) 뇌전증(腦電症)(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한다)

## 10. 팔다리

-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팔·손) 장애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 11. 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 12. 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 13. 정신 계통

-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제12조제2항 및 제40조제4항 관련)

2.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검사항목	불합격 기준(최초검사)
가. 일반 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li> <li>2) 중증인 고혈압증(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이고, 확장기 혈압 110mmHg 이상인 경우)</li> <li>3)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li> </ul>
나. 코·구강·인후 계통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다. 피부 질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 피부질환자 및 한센병 환자
라. 흉부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li> <li>2)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li> <li>3) 만성 폐쇄성 폐질환</li> </ul>
마. 순환기 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부전증</li> <li>2)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분당 150회 이상)이나 기질성 부정맥</li> <li>3) 심한 방실전도장애</li> <li>4) 심한 동맥류</li> <li>5) 유착성 심낭염</li> <li>6) 폐성심</li> <li>7)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li> </ul>
바. 소화기 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li> <li>2) 간경변증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li> <li>3) 거대결장, 계실염, 회장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li> </ul>

<b>사. 생식이나 비뇨기 계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만성 신장염</li> <li>2) 중증 요실금</li> <li>3) 만성 신우염</li> <li>4) 고도의 수신증이나 농신증</li> <li>5) 활동성 신결핵이나 생식기 결핵</li> <li>6) 고도의 요도협착</li> <li>7)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li> <li>8)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li> </ul>
<b>아. 내분비 계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증의 갑상샘 기능 이상</li> <li>2)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li> <li>3) 애디슨병</li> <li>4) 그 밖에 쿠싱증후군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li> <li>5) 중증인 당뇨병(식전 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통풍 등)</li> </ul>
<b>자. 혈액이나 조혈 계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혈우병</li> <li>2)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li> <li>3)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li> <li>4)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li> <li>5) 진성적혈구 과다증</li> <li>6) 백혈병</li> </ul>
<b>차. 신경 계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리 · 머리 · 척추 등 그 밖에 이상으로 앓아 있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li> <li>2)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li> <li>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li> <li>4) 두개골 이상, 뇌 이상이나 뇌 순환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이나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li> <li>5)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장애가 있는 경우</li> <li>6) 전신성 · 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li> <li>7)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li> <li>8) 만성 진행성 · 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 실조증, 다발성 경화증)</li> </ul>
<b>카. 사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li> <li>2) 난치의 뼈 · 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li> <li>3)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li> </ul>

타. 귀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경우
파. 눈	<p>1)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한다)</p> <p>2)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경우</p> <p>3)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p> <p>4)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p> <p>5) 색각이상(색약 및 색맹)</p>
하. 정신 계통	<p>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지적장애</p> <p>2)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p> <p>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p> <p>4)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 등</p> <p>5) 뇌전증</p> <p>6) 수면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발작, 몽유병, 수면 이상증 등)이나 공황장애</p>

## 붙임 2) 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채용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채용분야전부 (공통)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철도교통관제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사무1, 사무2 응시자),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전기, 신호, 토목, 차량 응시자)				
사무 (사무1, 사무2)	교통		교통	교통	
				사무자동화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자계산기제어	
			정보보안	정보보안	
전기전자 (전기, 신호, 통신, 전자)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반도체설계	반도체설계	
	산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	
	전자응용		메카트로닉스		전자캐드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설비			

채용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기전자 (전기, 신호, 통신, 전자)			산업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안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시설환경 (토목, 건축, 기계설비(기계), 기계설비(전기))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방수	방수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토목	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철도				
			철도토목	철도토목	철도토목
			철도보선	철도보선	보선
					측량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도시계획		도시계획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조립
			일반기계		

채용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시설환경 (토목,건축, 기계설비(기계), 기계설비(전기))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정밀측정
				연삭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배관		배관	배관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온실가스관리	온실가스관리	

채용분야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차량(기계), 차량(전기)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조립
		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정밀측정
					연삭
					공유압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전자부품장착		전자부품장착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배관		배관	배관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용융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응용				전자캐드
			전자계산기조작		
			응용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설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구 분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차량(기계), 차량(전기)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차량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전기안전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승 무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반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조립
		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건축전기설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반도체설계	반도체설계		
	산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자	전자		
	전자응용				전자캐드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구 분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승 무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통신설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안전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  
(통폐합 포함)은 인정, 단 가산 자격증에 해당해야 함

### 붙임 3)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 ○ 편의지원 항목

장애유형 및 등급			편의지원 항목
지체 장애	상지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공통편의지원, 답안지 대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뇌병변 장애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공통 편의지원, 답안지 대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시각 장애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공통 편의지원,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해당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 요루 장애 등		해당증후가 있을 경우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기타	임산부		시험 중 화장실 허용, 별도시험실(좌석간격 조정)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편의지원 대상 및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li> <li>·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산부 등 편의 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li> </ul>
기간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의지원 신청 :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li> <li>- 관련서류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li> </ul> </li> <li>·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해당 여부, 지원요건, 구비서류, 편의지원 항목을 확인 후 입사지원서 및 편의지원 신청화면에서 편의지원 내용 기재(채용홈페이지 신청)</li> <li>-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인 증명서 등)는 스캔하여 입사 지원서 작성시 첨부파일로 제출(등록)</li> </ul> </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li> <li>· 의사진단(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 제출 ※ 단,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li> <li>· 의사진단(소견)서에는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li> <li>· 임신부의 경우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예시) 상기인은 임신 ( )주, 필기시험 예정일(0000.00.00)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li> <li>·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에 한함</li> <li>· 확대문제지 등 : 확대문제지(118%, 150%), 축소문제지(82%), 확대답안지 (118%, 150%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답안표기)</li> <li>· 편의지원 신청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여부 결정은 채용홈페이지에 게재 될 예정이며, 반드시 자신의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편의지원 신청서 서식

## 붙임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붙임 5)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1. 응시자 협조 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 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되거나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 **코로나19 확진환자는 모든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확진 및 자가격리중인 사람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시험에 응시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3. 코로나19 확진환자 → 시험응시 불가**

### **4.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 → 예비시험실 시험 실시**

- (대상) 자가격리자 중 별도시험 신청자
  - 필기시험일(2021.8.1.) 기준 유효한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의심증상이 없는 무증상자
- (별도시험 사전신청) 응시자 →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
  - 2021.7.22.(목)부터 2021.7.30.(금) 18:00 까지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 신청
  - 별도시험 신청서 및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제출
- (외출허가) 응시자 → 관할 보건소 허가 신청
  - 관할 보건소 허가 후 2021.7.22.(목)부터 2021.7.30.(금) 18:00 까지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에 외출허가서 등록
- (시험응시 여부 결정) 발열검사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2차 체온측정 및 의료반 문진 후 시험응시 여부 결정  
⇒ 필기시험 일정에 따라 별도시험 사전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5. 증상이 의심되어 사전 신청한 자 → 발열체크, 의료반 문진 후**

#### **경중에 따라 예비시험실 시험 실시 또는 보건소 이송**

- (대상) 조사대상 유증상자로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응시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사전신청) 2021.7.22.(목)부터 2021.7.30.(금) 18:00 까지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 신청
- (시험응시 여부 결정) 발열검사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2차 체온측정 및 의료반 문진 후 시험응시 여부 결정